



제429회국회(임시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살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김교흥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80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자살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3

I. 개요

1.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등 127인
- (2) 제 안 일 : 2025. 9. 10.
- (3) 회 부 일 : 2025.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행,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 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자살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개정안은 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4장의2 자살예방기금</u> <u>제19조의5(자살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국가의 출연금</u> <u>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u> <u>3. 기금의 운용 수익금</u> <u>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u> <u>5.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10</u>

현행	개정안
<신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9조의6(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 2.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개발 및 실행 3.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 및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4.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 5. 자살예방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참여 기반 사업 지원 6.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예방 연구·개발 지원 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 지원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7(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리나라의 2024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4,872명, 자살률¹⁾은 29.1명으로서 202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 2020~2024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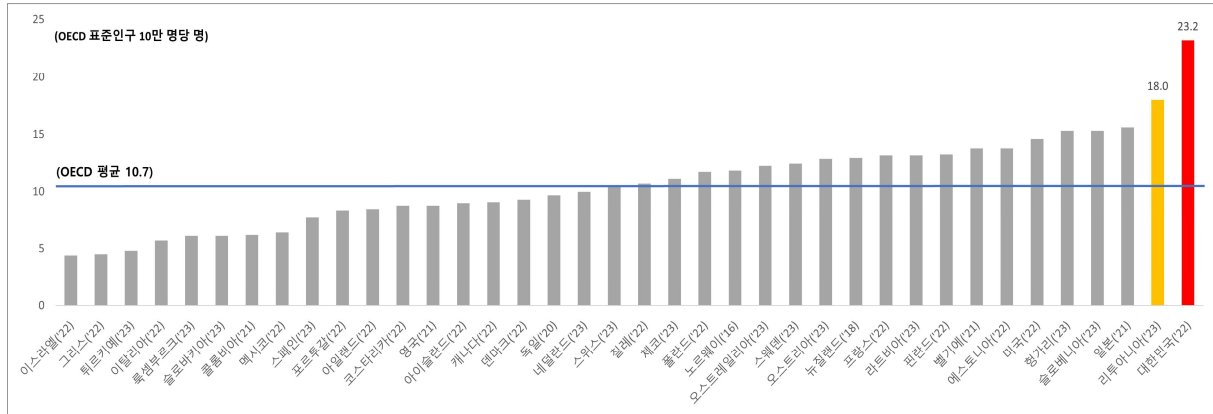
(단위 : 명,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살자 수	13,195	13,352	12,906	13,978	14,872
자살률	25.7	26.0	25.2	27.3	29.1

* 출처 : 2020~2024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말함.

국가간 비교를 위한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²⁾은 23.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임.



* 출처 : OECD.STAT, Health Status Data('25.7.추출)

□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³⁾을 재원으로 하여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⁴⁾, 자살예방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OECD 기준 인구를 활용한 기준임.

3)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2017.3.21., 2017.12.30., 2021.7.27.>

1. 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1) 쉐련형: 20개비당 750원
 -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 2원
4. 엽쉐련(엽권연): 1그램당 85. 8원
5. 각련(각연): 1그램당 30. 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 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 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 1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 5원

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자살자 심리부검 체계 구축,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함.

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⁵⁾,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⁶⁾,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⁷⁾,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지원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의5제1항은 그 재원을 자살예방기금의 신설을 통하여 마련하려는 것임.

□ 기금은 단일회계주의 원칙⁹⁾의 예외로서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함으로써 특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나, 과도하게 설치될 경우 칸막이 현상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심화, 내부거래에 따른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¹⁰⁾에서

-
- 5)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함.
-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기관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등과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인력 양성,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등 세부 내용으로 함.
- 7) 중앙정책지원기구로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8)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109) 운영을 세부 내용으로 함.
- 9) 단일회계주의란 국가의 세입·세출을 하나의 회계로 통일하여 정리하는 원리를 말하며, '예산단일주의' 또는 '회계통일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이는 국가 재정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1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¹¹⁾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19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별표2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¹²⁾이 의결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¹³⁾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11) 이에 해당되는 법률은 2025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등 총 71개임.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자살예방기금이 자살예방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별도의 재원 없이 정부출연금, 복권수익금, 보통세(주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금 신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임.

□ 안 제19조의5제2항은 자살예방기금의 재원에 관한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자살예방기금의 재원 >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10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안 제19조의5제2항제4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¹⁴⁾

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3.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을 자살예방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해당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해당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¹⁵⁾으로서 신설되는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이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시행령¹⁶⁾에서 규정하는 비율만큼 나눠서 분배받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기금·지방자치단체 등이 배분받는 금원의 축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복권수익금이 배분되는 기금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 복권위원회, 2022 복권백서, 2022. 4, p. 309

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금의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¹⁷⁾이 의결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의5제2항제5호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4년 주세로 징수된 금액은 3조 2,533억 원으로 파악되므로 3,253억 원이 재원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세부 사업 586억 8,500만원의 약 5.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재원 만으로도 현행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지만, 재정 당국 또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 또한, 안 제19조의5제2항제6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18)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징금을 재원

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금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 등	용도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6 각 호의 사업

으로 배분받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응급의료기금의 입
장에서는 금원이 줄어들게 됨.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는 최근 지원대상이 확대
되면서 지원금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¹⁹⁾이고, 응급의료기금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응급의료분야 투자를 강화 중인 상
황²⁰⁾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8항²¹⁾에서는 징수된 과징금의
용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징금을 자살예방기금의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811호)²²⁾이 의결될 필요가 있음.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①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
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 210억원 → ('21) 446억원 → ('23) 1,010억원 → ('24) 1,582억원임.

2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응급의료기금 사업비는 ('24) 2,695억원 → ('25) 2,973억원 → ('26. 정부안)
4,619억원임.

2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
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8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기금의 지원

□ 안 제19조의6은 자살예방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세부사업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자살예방기금의 용도 >

개정안 제19조의6 각 호	내 용
1.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	- 일반인에 비하여 자살률이 높은 대상군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조기발굴, 위기 지원 등을 시행하는 사업 - (자살고위험군) 자살 시도 및 자살 사망의 위험성이 일반 인구집단 보다 현저히 높은 사람들의 집단(WHO 정의)
2.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개발 및 실행	- 자살예방사업의 표준 지침에 기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개발하여 실행
3.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 및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예방 및 차단 사업으로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견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사업자에 신고·삭제요청 실행 (참고) - (생명지킴이) 자살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자원(기관,전문가)에 연계하는 사람으로,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
4.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가족,친인척,친구,동료 등)의 일상회복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5. 자살예방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참여 기반 사업 지원	- 자살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 - 현재는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정부,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련전문가단체) 운영 및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자살예방사업 지원 추진
6.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	- (자살실태조사) 「자살예방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추진

개정안 제19조의6 각 호	내용
살예방 연구·개발 지원	- (심리부검) 자살유족과 전문가가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원인을 검토하고 분석
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관련 사업 지원	- 「자살예방법」 제12조의4에 근거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동법 제13조에 근거한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대응,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그 밖에 자살예방기금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의7은 자살예방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되, 그 업무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유사한 입법례가 다수 있음.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는 입법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7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업 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u>국가유산기본법</u> 」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u>국가유산진흥원</u> 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나, 기금을 신설하는 데에 따른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개정,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예방기금은 주세법에 따른 주세만으로도 최소 3,500억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살예방사업의 획기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재정 규모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재원이 되는 각 항목의 규모와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려는 자살예방기금의 목적사업은 이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고, 자살예방기금의 재원은 「국개재정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 신설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고, 복권수익금 등 자살예방기금의 재원은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살예방 간 정책적인 연관성이 낮음.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계획은 2025년 562억에서 2026년안 708억원으로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임.

문 의 처
02)6788-5498